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 (II)

광범위한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사건을 보상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

CHUBB®



Chubb는 20년 이상 사이버 사건을 처리하고 고객의 사이버 위험을 담보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된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수많은 사이버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다양한 기업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적 사이버 위험입니다. 시스템적 사이버 위험은 광범위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전체의 위험을 해결하려면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II)의 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Chubb이 제공하는 사이버위험관리보험(II) 및 광범위한 사건 확장담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 고유의 위험과 필요에 맞게 보험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한 보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수 업종

- 제조
- 의료서비스
- 교육
- 도매 및 물류
- 운송
- 전문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등)
- 테크놀로지
- 소매
- 공공기관 및 각종협회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개인정보 혹은 기업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및 *사고대응비용
- 정보통신보안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및 *사고대응비용
- 인터넷 상에 배포하는 전자적 미디어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비방, 표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데이터 유출, 손상, 컴퓨터 시스템 공격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협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홍보, 법률, 위기대응 자문 비용 및 협박을 종결 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악성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래밍과오(Error), 인적 과오(Human Error)의 사유로 인해 손실 및 파괴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
- 악성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래밍과오(Error), 인적 과오(Human Error)의 사유로 인해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 또는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 중단 혹은 방해되어 발생한 기업휴지 손실 및 복구비용

*사고대응 비용

- 외부 포렌식 서비스 비용
-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따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 발생 시의 통지비용 (자발적 통지비용 포함)
-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동의를 개인에 한하여 신용, 신원도용, 소셜미디어 등)
- 피보험회사의 평판을 보호, 복구하는 목적의 홍보, 컨설팅 회사 또는 법무법인 서비스 비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II)를 통해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지불 카드 손실:

사이버 사건으로 인해 지불 카드 산업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책임

규제 벌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규제 조치에 대한 방어와 과징금 및 처벌에 대한 담보

미디어 배상책임:

정의된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사고 대응:

법률 비용, 포렌식, 통지 비용, 신용 모니터링, 홍보 등

기업 휴지:

피보험자의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 그리고 간접 기업휴지 담보 가입시 공유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제 3 자의 손해 포함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

손실되거나 손상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통신 사기:

승인되지 않은 통화 또는 데이터 요금이나 망사용료에 대한 청구 금액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갈취 사건을 종료하거나 끝내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지불금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 (II)에 새롭게 도입된 확장담보

- 광범위한 사건 확장담보는 피보험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 3 자에게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사건을 담보합니다. 재물보험에서 홍수 및 지진 위험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게 모든 광범위한 사건 혹은 특정 위험에 대해 담보범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및 공동보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랜섬웨어 확장담보는 증가하는 랜섬웨어 위험을 다루며 맞춤형 담보범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및 공동보험을 모든 사이버 담보조항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지원 종료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공격 확장담보는 패치 배포시점부터 45 일 동안의 전체 담보를 제공합니다. 45 일 이후에도 패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위험 공유를 점진적으로 재조정합니다.

경쟁 우위

- 1998 년 첫 상품 출시 이후 사이버 위험 솔루션의 선도적인 보험사입니다.
- 고객의 고유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이고 고도로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모든 규모의 위험에 대해 담보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율합니다.
- 법적 최소 요구 사항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기반 솔루션을 갖춘 사이버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진화하는 규제, 법률 및 사이버 보안 표준을 해결하고 향후 변경 사항까지 감안하여 설계된 혁신적인 보험을 제공합니다.
- 일반 사이버 사고의 흐름에 맞춰 쉽게 읽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데이터 저장 및 호스팅의 지속적인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담보하는 세계 지역 특약을 제공합니다.

3 중 접근 방식

- **손실 경감 서비스** - 사고 발생 전에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구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대응 서비스** - 법률, 컴퓨터 포렌식, 통지, 콜센터, 홍보, 사기 상담,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복구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팀이 사건 발생 시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리스크 보호** - Chubb 의 강력한 재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범죄, 고의적인 사기 또는 고의적인 부정직 행위
- 신체의 손상 / 재물손해
- 피보험자 상호 간 손해배상청구 (단,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외)
- 보험개시일 이전에 알고 있던 사고
- 자연재해
- 전쟁 및 테러 (단, 사이버 테러 행위에 따른 청구 제외)
- 특허 또는 영업비밀
- 지식재산권 (단, 미디어 배상책임보험 제외)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 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객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2,46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미화 620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 재무 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 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 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45,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금융보험부
Financial Lines
Property & Casualty Division
EFinLines.KR@chubb.com

Chubb. Insured.S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중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에이스아메리카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 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중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카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작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 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60조 제4항).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납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1566-5800 (고객서비스센터)
- 인터넷 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국번없이 1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4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4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hubb. Insured. SM